

시인  
예規

# 총무처

총무처 예규 제 43호 (72~1945) 1971. 3. 27

수신 수신처 참조

체무 공무원 해외주재에 따른 인사처리요령" 통보.

공무원 해외주재령 개정령 (대통령령 제 4697호 1970.

3. 3) 및 주무총리훈령 제 96호 (1970. 12. 30)에 의한 주종귀국회 정리처시에 따라 "공무원 해외주재에 따른 인사처리요령"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외무부 및 각 파견기관의 장은 공무원 해외주재에 따른 인사처리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공무원 해외주재에 따른 인사처리 요령 1부. 끝.

총무처	총	무	처	장
	장	부	장	부

인사처리  
일시 71-3.29  
접수  
1000  
4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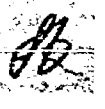


부피는 노란이 붙일과 혼란을

PK

# 공무원해외주재에 따른 인사처리요령

1. (목적) 이 예규는 공무원을 해외에 주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공무원등 해외주재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2조에 규정된 파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(파견기관의 장) 영 제2조 이하에서 "파견기관의 장"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"소속장관"을 말한다.
3. (심사요구)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기관의 장이 해외에 주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(이하 "후보자"라 한다)에 대한 적격심사를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



으로,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ㄹ (심사방법) ①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을 심사장으로 하고, 총무처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2인의 심사관을 지정하여, 심사한다.

② 총무처장관은 후보자에 대한 심사일정을 정하여 외무부장관과 파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.

③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 판정은 후보자의 외국어 및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면접 또는 필기의 방법에 의하여 심사한다. 다만, 후보자가 해외파견등 부득이한

사유로 심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등  
참고자료에 의한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.

(검직발령절차) ①영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  
하여 외무부장관이 외무직공무원으로 제청 또는 발  
령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

지체없이 피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  
만, 3급을류 이상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에게도  
통보하여야 한다.

②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 
3급을류 이상의 외무직공무원으로 검직제청할 때에는  
재외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검임직급과 해당호봉을  
명기하여 총무처장관을 거쳐 제청하여야 한다.

③ 후보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외무직 검직공무원을 승

(사41)

총무 200-

1971

수신 총무처장관

참조 인사과장

제목 해외주재공무원심사요구

1. 공무원등 해외주재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 
 의하여 당(부) 해외주재예정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 
 선정 하였으니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해외주재임용예정공무원

소속 및 직위	직급	성명	임용예정		파견 예정원	주재예정 주종종어	외무부와의 협의 여부	비고
			부서	직급				

첨부: 1. 이력서 (별첨 2 서식) 1부

2.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매 (※첨이하여 환원) 1부

0201-1-33부  
1971-3-26 승인

190mm X 288mm (신문용지 50%)

5~

(서식 2)

해외주재예정공무원이력서			
① 성명	(한글)	(한자)	② 생년월일
③ 임용예정직위			④ 주재예정국
⑤ 출입지급	⑥ 호봉	⑦ 특응여	
⑧ 학력			
⑨ 주요경력			
⑩ 해외경력			
⑪ 기타사항			

0201-1-34A  
1971.3.26. 승인

190<sup>2001</sup> X 268<sup>2001</sup> (서무총서 502/2)

例規



總務處例規第45号

題目 公務員任用令改正要旨及人事業務處理要領  
(令第5606号 1971.4.19公布施行)

要旨

1. 研究及指導職公務員の所属長官変更  
特特別市 釜江市 道 市 郡 町 村 農 村 振 興 事 業 上  
従事する研究及指導公務員の所属長官を  
農 村 振 興 庁 長 官 と する

2. 轉職任用  
轉職任用職是職の總理令に是れ特殊職級の  
の経過に是れ當該職級の該當する資格記号  
特別轉職任用とする

3. 特別昇進試験應試資格停止区分  
1次試験... 每科目4割未満は總英の割未満  
2次... 每科目4割未満は不合格者

4. 職級新設及調整  
外 行政職群の 監査職列 新設  
内 技能職職級新設及調整 (鉄道 專賣 通信 職列)  
等級区分 1-15等級とする



### 5. 技能職 職級調整에 따른 經過措置

現案機關에勤務중인 技能職 및 一般職官署에勤務중인 技能職은 各々改正된 該當等級에

1971. 4. 1日자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

現行等級	改正等級
1等級	6等級
2 "	7 "
3 "	8 "
4 "	9 "
5 "	10 "
6 "	11 "
7 "	12 "
8 "	13 "

### 6. 其他事項

가. 이令施行當時 現案官署勤務중인 技能職公務員을 이令施行日로 부터 3月內의 5等級以上으로 昇進任用함에 있어는 昇進任用基準에 協치

나. 이令施行當時 現案官署勤務중인 雇傭員을 3月內에 그 俸給額의 該當하는 技能職으로 任用함에 있어 試驗을 免除함

다. 現案官署의 雜務職 職務의 停年은 從前과 同임